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96)
------------	-----

제출년월일 : 2005. 1.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법률 제7188호 2004. 3. 11)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그밖에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북 도에서 통보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근 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
(법률 제7188호 : 2004. 3. 11. 제정)

4. 의 안 전 문 : 불 입

5. 신구조문대비표 : 불필요

6. 기타참고사항 :

- 충청북도 안전관리과-5983(2004. 7. 14)호에의거 조례표준안 시달(붙임)
- 입법예고
 - 기간 : 2004. 11. 6 ~ 11. 30 (25일간)
 - 방법 : 제천시홈페이지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교육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부군수)
2. 시·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본부장
3. 시·군 관할 경찰서장
4. 시·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관할 군부대가 없는 경우 인근 시·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
5. 시·군 교육장
6.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제외한다)
7.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는 예상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이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소방방재청장은 시·도 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 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시달

2004. 6. 1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조속히 시·군 실정
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시고 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임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1부 끝.

충청북도지



수신자 청주시장(하수과장), 충주시장(사회진흥과장), 제천시장(환경과장), 청원군수(건설과장), 보은
군수(건설과장), 읍천군수(건설과장), 영동군수(건설과장), 증평군수(도시개발과장), 진천군수
(건설과장), 괴산군수(건설과장), 음성군수(건설과장), 단양군수(건설과장)

★지방행정주사 백덕영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준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건설교통국장 전경 07/14
김종문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5983 (2004.07.14.) 접수 건설과-7273 (2004.07.16.)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512 / 전송 043) 220-4539 / bydng0056@cb21.net / 공개


[HOME](#) | [ENGLISH](#) | [CHINESE](#) | [JAI](#)

일반시장실 | 푸른재천 | 사이버사정 | 시민광장 | 전자민원창구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정보

오늘의 뉴스 | 공지사항 | 입법예고 | 인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스크랩 | 푸른제천소식지 | 2004년 주요업무계획 | 금연주3

21세기 맞춤 재진을 위한 제천시의 의지와
시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Location > 을 > 사이버사정 > 입법예고

사이버시정

■ 오늘의 뉴스

■ 시정영상 뉴스(VOD)

■ 공지사항

■ 보도해명

■ 입법공고

■ 입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스크랩

■ 푸른제천 소식지

■ 2004주요 업무계획

■ 달라지는제도시책

■ 공약추진사업

■ 시정100선

■ 재정현황

■ 입법예고사항

입법

*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

■ 입법		총: 14	
번호	제목	이통	다운
145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 입...	자연환경과	2
144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정과	2
143	제천시주민등록 및 민감업무당공무원보험 공제...	생활민원과	2
142	제천시주민등록업무의율면동위임조례증개정안 ...	생활민원과	2
141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	복지사업과	2
140	제천시남금당설치 및 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	복지사업과	2
139	제천시하수도 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환경관리사업소	2
138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세정과	2
137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입...	기획감사실	2
136	제천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안입법...	박선희	2
135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	제천시립도서관	2
13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건축과	2
133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복지사업과	2
132	제천시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안 입...	주민지원과	2
131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투자통상실	2
130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법예고...	건설과	2
129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입법예...	자연환경과	2
128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증...	산림녹지과	2
127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법예고...	복지사업과	2
126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	복지사업과	2

[1][2][3][4][5][6][7][8]

NAME SUBJECT CONTENTS

일반시장실 | 푸른재천 | 사이버사정 | 시민광장 | 전자민원실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정보광장 | 제천

Copyright © 2002, Jecheon City All rights reserved. [문서번호] [작성일] [작성자]